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금고의 기준을 정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일부 권한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으로 인한 공명선거감시단의 의무 설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금고 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나. 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 등 개선(안 제7조, 제8조의3)

- 상근임원의 선임시 자산 판단 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자산

총액으로 변경하고, 자산 8,000억원이상 금고는 경영 평가 결과 등급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근임원(감사) 1명을 두도록 함.

다.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을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라. 외부감사 의무 대상 금고 기준 설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 대상 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마.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규정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삭제, 제59조제2호의4 삭제)

-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의 경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바. 금고 상환준비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제1항)

- 법 제28조제5항에서 상향된 상환준비금 예치비율을 시행령에도 반영함.

사. 재판상 대리인 선임시 등기 대상 추가(안 제30조제1항)

- 재판 등 대리인 선임시 등기 필요 대상에 기존 중앙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2명 외 전무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3명을 추가함.

아. 비업무용 자산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등 규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신설, 제51조의2제6항 신설)

1)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자산, 금고가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2)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인수가격 확정이 불가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함.

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안 제47조의7 신설)

-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 중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금고의 전무, 상무 직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정함.

차. 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 위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56조의2, 제56조의3)

- 중앙회장에게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 권고·요구와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및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카. 새마을금고복지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51조의2제7항 신설, 제58조)

- 시행령에 위임된 복지회 사업 범위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 1명(상근감사로 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의3(중전의 제8조의2)제1호 중 “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말한다)”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하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로 하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의4(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중 “임원 선거 공고일”을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분의 1”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고는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가”를 “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제47조의4 앞의 “제4장 감독”을 삭제한다.

제47조의4를 제47조의6으로 하고,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

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7조의6(중전의 제47조의4)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감독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 중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

3.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4. 법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권고
제51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80조의2”를 “법 제80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80조의2 또는 제80조의4”를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80조의5”를 “법 제80조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을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28조제1항제8호”를 “법 제28조제1항제10호”로 한다.

4의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제51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매각, 보전·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 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의2 중 “법 제80조의3제2항”을 “법 제80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의4제1항”을 “법 제8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5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24년 1월 1일
-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 2의5. 제10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7. 제47조의7에 따른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 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부분과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 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u>	제7조(상근임원) ----- ----- ----- ----- ----- <u>. 이 경우 자산은 이사 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 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 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지 역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 고: 1명(상근감사로 한정한다)</u>
<u><신 설></u>	<u>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 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u>

<u>제8조의2</u>(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u>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말한다)</u>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2. (생략) <u><신설></u> <u>제10조의2</u> (생략) <u>제10조의3</u>(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 ① 법 제23조	<u>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u> <u>제8조의3</u>(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 ----- ----- -----. 1. ----- ----- <u>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u>----- ----- ----- 2.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u>(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u>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u> <u>제10조의3</u>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 <u>제10조의4</u>(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 ① -----
--	---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
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
고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2개월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10조의4(공명선거감시단의 구
성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
른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공명
선거감시단”이라 한다)은 선거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
로 구성한다.

②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
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감시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

----- 임원 선거 공
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
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
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를 수행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
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공명선거감시단
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 5일
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제16조(상환준비금) ① -----

-- 100분의 80 -----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금고는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장 감독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u><신 설></u>	<u>제4장 감독</u>
제47조의4 (생략) <u><신 설></u>	제47조의6 (현행 제47조의4와 같음)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 중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	제48조(경영공시) ① ----- -----

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고 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 (생략)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생략)

<신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

3.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

5. <u>법 제80조의2</u> 에 따른 계약이 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5. <u>법 제80조의3</u> ----- -----
6. <u>법 제80조의2 또는 제80조의4</u> 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6. <u>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u> ----- -----
7. <u>법 제80조의5</u> 에 따른 파산신 청에 관한 사무	7. <u>법 제80조의6</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 또는 <u>회장(법 제65조 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 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 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를 포함한다)</u>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 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 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u>회장(법 제65조 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 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 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u> -----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④ -----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
업에 관한 사무

⑤ (생략)

<신 설>

<신 설>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8조제1항제10호-----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매각, 보전·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

	<u>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u>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u>	<u>법 제80조의4제2항</u>----- ----- ----- ----- ----- -----.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u>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1. 2. (생략)	<u>법 제80조의5제1항</u>----- ----- ----- ----- -----. 1. 2. (현행과 같음)
제58조(복지기구) ① <u>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u>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u>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u>

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한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

----- 1월 1일 -----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u>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u> 2. (생략) <u><신설></u> <u>2의2. 제8조의2에 따른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u> <u>2의3. (생략)</u> <u>2의4.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u> <u><신설></u> 3. ~ 6의2. (생략) <u><신설></u> 8. ~ 13. (생략)	----- -----. <u>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24년 1월 1일</u>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8조의2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u> <u>2의3. 제8조의3</u>----- ----- <u>2의4. (현행 제2호의3과 같음)</u> <u><삭제></u> <u>2의5. 제10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u> 3. ~ 6의2. (현행과 같음) <u>7. 제47조의7에 따른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2026년 1월 1일</u> 8. ~ 1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6